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1. 운영목적

성심노인전문요양원 행복한사람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기초로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최적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행복한 삶의 질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소정원

성심노인전문요양원 행복한 사람들의 입소정원은 60인으로 한다.

단,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입소자(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입소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입소대상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피해 노인으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3)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노인
- 4) 위 1,2,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노인

4. 입소 절차

- 1)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2등급(3~5등급은 시설급여 판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 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 2) 시설 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은 상세 절차에 따른다.

5. 건강진단서

입소자(보호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시 1개월 이내의 건강진단서(결핵검사 포함) 및 병적기록을 시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감염병에 대한 정기검사로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6. 계약목적

- 1)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기간동안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7. 계약기간

- 1)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 2) 계약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상에 명시한 입소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장기요양 갱신 신청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내역서를 별도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월이용료(30일 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5등급
1일 입소비용	93,070	86,340	81,540
월 입소비용	2,792,100	2,590,200	2,446,200

2) 비급여 항목 내역

- 식재료비 : 1일 3식 10,500원(식사 1회당 3,500원). 간식비 1일 1,000원
- 경관유동식: 1일 3식 3,600원(식사 1회당 1,200원). 간식비 1일 1,000원
- 상급침실료 : 1인실(월 150,000원), 2인실(월 100,000원)

3) 본인부담률에 따른 월 이용료(식비포함)

본인부담률	1등급	2등급	3~5등급
20%	922,034	880,308	850,548
12%	691,208	666,160	648,304
8%	575,795	559,117	547,213
기초수급자	무료		

9. 계약의 해지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계약해제

- 1)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입소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 ② 월 이용료 또는 기타 입소자가 시설에 납부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 했을 때
 - ③ 월 이용료의 빈번한 납부지연으로 시설과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칠 때
 - ④ 장기부재로 계약을 계속 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 ⑤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 2) 입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지했을 때에는 곧 거실을 명도하여야 한다.

2. 입소자의 계약해제

- 1)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제출하되 신청서상의 계약해지일은 15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며 지정된 계약 해지 일에 본 계약은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 2)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지 일까지 시설에서 퇴거하며 입소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시설에서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퇴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째를 계약 해지일로 한다.

3. 기타 퇴소사유가 발생할 시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기타 시설장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10.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11. 수급자의 의무와 책임

1. 수급자의 의무

- 1) 수급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2. 수급자의 책임

- 1)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2)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